

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

- ◆ 본 지침은 감염병 응급의료 TFT(보건복지부, 중앙응급의료센터, 대한응급의학회) 논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.
- ◆ 학회 의견에 따라 지침의 분량 및 형식을 간소화하였습니다.

- 모든 응급실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내원환자를 적극 수용
- 모든 응급실 내원 환자*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, 의료진은 환자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관리·감독 철저
 - * 기관삽관 필요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환자 제외
- 또한, 환자 간 감염 예방을 위하여 (일반)병상 간 간격을 1.5m 이상으로 유지(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법정 의무사항)
-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해 先進료, 필요 시 後검사
 - 既확진 응급환자 내원 시 1인 격리병상(음압 또는 일반) 배치
 - 1인 격리병상 포화 시, 호흡곤란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확진환자 외에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확진환자는 다인 격리병상*으로 이동(의료기관별 상황에 따라 일반병상**으로 이동도 가능)
 - * 코호트 구역 : ▲응급실 내·외부 모두 설치 가능(보호자 대기실, 출입구 인접공간 등), ▲공조, 환풍기 설치 등을 통해 환기 필요, ▲가벽(파티션, 이동형 스크린, 자바라 등), 문 등으로 일반병상과는 2m 이상 거리를 두고 공간을 분리
 - ** 단, 이러한 경우 병상 간 간격은 1.5m 이상을 확보하고 방수성 커튼 등을 활용하여 구분할 것
- 既확진이 아닌 모든 응급환자 내원 시 우선 일반병상(응급실 내 관찰구역 등)에 배치,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
 - 의심환자로 의료진이 판단하여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 시, 격리병상으로 이동
- 환자의 응급실 체류 시간 단축을 위해 응급실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
- 권역응급의료센터, 중증응급진료센터는 경중·비응급 환자 내원 시 귀가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·기관 등에서 진료토록 안내